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 기폭 : 시미즈 히로시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생존=발달권”

와타나베, 아키오

多胡, 太佑

(Citation)

계간 교육법, 220:76-80

(Issue Date)

2024-03-25

(Resource Type)

journal article

(Version)

Author's Original

(Rights)

本論考はエイデル研究所の許諾を得て転載・公開しております。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1609>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 기폭:

시미즈 히로시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생존=발달권”

시미즈 히로시 (清水 寛) 1936 년~

와타나베 아키오 (渡部昭男)

오사카세이케이대학 특별 초빙 교수

1. 전쟁·군대와 장애인 문제의 사적(史的) 연구

시미즈 히로시(경칭 생략 / 사이타마대학 명예교수·전국장애자문제연구회 고문)는 중일 전쟁이 시작하기 전인 1936 년(쇼와 11 년)에 도쿄 상점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다섯 자매 중 4 번째로 태어났다. 기고 2022 「전쟁·군대와 장애인 문제의 사적(史的) 연구에 다다르게 한 경험」(의료생협 사이타마 『건강과 평화』(365) 8-9)(「戦争・軍隊と障がい者問題の史的研究に至った体験」(医療生協さいたま『けんこうと平和』(365)8-9)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전쟁과 관련한 두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가지는 소싯적부터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는 강한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한 채 자랐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전쟁 경험(이등병으로서 만주 소집, 시베리아 강제 역류)과 만년의 정신 상태가 시사한 부분이다. 즉, ‘전쟁은 체험할 때 괴로우며, 늙어서 심신이 약해졌을 때 몸과 마음의 저변 깊숙이 새겨진 공포가 되살아나, 다시금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고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죽어가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그 기고에서 시미즈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라는 표제에 이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가 구별되거나, ‘열등하게 처우(less eligibility)’하는 사회는 결코 평화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모든 ‘구조적 폭력’(J.Galtung)을 주의 깊게 간파하여 그것들을 다같이 하나씩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끈질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쓰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강한 신념과 정열을 바탕으로, 사이타마대학을 퇴직하고 70~80 대에도 왕성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집필한 것이 편저 2006 『일본 제국 육군과 정신 장애 병사』 후지출판(376·6 쪽), 편저 2016 『한센병 아이 문제사 연구: 국가에 의해 격리된 아이들』 신니혼출판사(549 쪽), 2018 『태평양 전쟁 중 전국의 장애아 학교: 피해와 익찬』 앞과 같음(455·59 쪽), 2019 『태평양 전쟁 중 국립 한센병 요양소: 다마젠쇼엔을 중심으로』 앞과 같음(597 쪽), 등이다⁽¹⁾(編著 2006 『日本帝国陸軍と精神障害兵士』不二出版 (376・6頁), 編著 2016 『ハンセン病児問題史研究: 国に隔離された子ら』新日本出版社 (549頁), 単著 2018 『太平洋戦争下の全国の障害児学校: 被害と翼賛』同 (455・59頁), 単著 2019 『太平洋戦争下の国立ハンセン病療養所: 多磨全生園を中心に』同 (597頁)).

본고에서 다루는 30~40 대 때의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생존=발달권”은 본류인 사적(史的) 연구에 흘러 들어 거대한 강을 만드는 물의 흐름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 기폭

【요네자와 코이치[米沢広一] 2005・2008・2011・2016 헌법학에 바탕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에 대한 주목】

헌법학이 전문인 요네자와 코이치 『헌법과 교육 15 강』(호쿠주출판, 2005・2008 [개정판]・2011 [제3판]・2016 [제4판])은 일본국헌법 26 조 1 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헌법 26 조 1 항은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는 종래에는 “능력에 비추어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치루도록 해 합격자만을 입학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교육을 받을 능력과 상관 없는 여건(재산, 가정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미야자와)고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그 뒤 “모든 아이들이 능력 발달 방식에 따라, 되도록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 발달상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카네코 마사시)도 힘을 얻게 되었다. 인간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인식이 타당할 것이다. [제4판 142]

【카네코 마사시(金子仁) 1971・1978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 수정】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을 확립한 것은, 교육법학의 바이블과 같은 존재인 카네코 마사시 『교육법 [신판]』(유히카쿠 1978) (金子仁『教育法 [新版]』有斐閣, 1978)다. 신판에서 카네코는 구판의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 해설을 바꾼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서 구판(1963년)의 70・74 쪽에서는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는 교육에 있어 불평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의 보장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능력정도주의’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자는 이미 이와나미신서(岩波新書)・국민의 교육권(1971년) 139~142 쪽에서 본문의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점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 상태는 이제는 교육상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그 조건 정비를 요구할 근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신판 233, 숫자를 한문으로 표기하고 세로쓰기 한 것을, 산용숫자 표기와 가로쓰기로 수정했다/ 이하 동일]

【시미즈 히로시 1969 『교육학연구』 36(1)/ 1972 『일본교육법학회 연보』 (1)의 의의와 공헌】

수정된 카네코 마사시 『국민의 교육권』(이와나미신서 1971) (金子仁『国民の教育権』岩波書店, 1971)에는 그로부터 2년 전인 1969년에 발행된 『교육학연구』 36 권 1호를 논거로 이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학습권에 대한 실현 요구라고 한다면, 장애아동이야말로 그 권리 주체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육친으로서 더욱 강한 애정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불가능한 암담함 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은 오로지 국가의 조건 정비에 달렸으며 부모의 취학 의무는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장애아동이야말로 능력 면에서 발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환경에서의 훌륭한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학계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로 『교육학연구』 36 권 1 호 「특집 · 장애아 교육」 1969 년(쇼와 44 년)을 참조 (『教育学研究』 36 卷 1 号 「特集 · 障害児教育」 昭和 44 年)). [142]

그리고 『교육법 [신판]』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며 학습권설에서의 교육 조리 해석을 주창하는 부분에서는, 시미즈(등)의 저작물이 주기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의 적극적 조건 정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인권이라고 보는 교육인권성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경우,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학습권’ 즉 학습에 따라 인간답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그 학습권과 인간적 발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 조건 정비를 요구할 권리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문구도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²⁾) 능력 발달 방법에 따라 능력 발달을 할 수 있는(능력 발달상 필요에 따른) 교육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이미 교육법학계에서의 통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31-232, 원문의 방점 표기를 밑줄로 표기함]

・・・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장애아는 치료와 함께 뛰어난 교육을 받는다면 조금씩이라도 장애를 극복하면서 인간답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명력을 더하는 것으로, 중도의 장애아동이야말로 인간적 발달권의 국가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 권리 주체로 다뤄져야 한다. [232, 중략을 ・・・로 표기함]

먼저, 앞 단락의 “교육법학계에서의 통설적 해석”이라는 주기에는 이가라시 아키라(五十嵐頤), 호시노 야스사부로(星野安三郎), 마키 마사나(牧柁名), 나가이 켄이치(永井憲一), 호리오 테루히사(堀尾輝久), 야마자키 마사히데(山崎真秀), 카츠노 미츠유키(勝野充行) 및 사카키 타츠오(榊達夫)의 저작 등과 함께 시미즈 히로시 1972 「장애인의 ‘생존과 교육’의 권리-발달권 보장의 관점에서-」(清水寛 1972 「障害者の『生存と教育』の権利-発達権保障の立場から-」)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교육법학회(1970 년 8 월 27 일 창립/ 회장: 아리쿠라 료키치[有倉遼吉], 사무국장: 카네코 마사시[兼子仁])의 학회지 『일본교육법학회연보』의 창간호에 수록된 것으로 제 1 회 정기총회(1971 년 3 월 27 일)의 제 2 분과회 ‘교육 조건 정비의 법제와 실태’에서 시미즈가 발표한 보고 ‘장애아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내용을 더한 것으로, 46 쪽(108-153,

연보 전체 216 쪽 중 1/5 를 차지함)에 달하는 장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의 주기는 “교육 제도 검토 위원회 · 일본의 교육개혁을 요구하며(케이소쇼보판[版]) 205-7 쪽, 시미즈 히로시=미시마 토시오 편 ·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메이지도서) 138 쪽(시미즈 집필) 참조”(233)(「教育制度検討委員会 · 日本の教育改革を求めて(勁草書房版) 205-7 頁, 清水寛=三島敏男編 · 障害児の教育権保障(明治図書) 138 頁(清水氏執筆), 参照」(233))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1975 년에 발간된 공동 편저로, ‘시미즈 집필’이란, 말그대로 시미즈 논문 1969 을 「헌법 · 교육기본법제의 성립 과정과 장애아의 학습권」(「憲法 · 教育基本法制の成立過程と障害児の学習権」)으로 제목을 수정하여 전제한 부분(120-141)이다.

시미즈 논문 1969 · 1972 의 역사적인 의의와 공헌은, 교육법학이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으로 전환하는(헌법학에서도 주목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³⁾.

3.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생존=발달권”

【시미즈 히로시 1975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으로의 정립 · 수렴】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이라는 핵심 문장은 시미즈 논문 1969 에서 쓰이지는 않았다. 당시는 “발달에 필요한 여러 권리를 통일적으로 보장한다”(36)라고 서술했다. 시미즈 논문 1972 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화가 아니라 그 장애에 대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 · 교육 · 노동 · 보호 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리의 실질화 원칙이다”(141)(원문의 방점을 밑줄로 표기)라고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이라는 명료한 표현으로 정립 · 수렴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공동 편저 1975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부터다. 표현에 대해 끈질기게 사색하고 고뇌하는 추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헌법 ·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 균등” 조항의 “평등하게”는 신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에 바탕한 권리의 무차별 평등성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능력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보완 규정으로, 전전(戰前)부터 이어진 장애아의 발달 보장을 위한 실천 · 운동의 성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137]

【시미즈 히로시 1979 ‘생존=발달권’론의 특징: 생존-학습-발달】

한편, 소년법이 전문인 핫토리 아키라(服部朗)는, 2002 「성장발달론의 생성」(『아이치가쿠인대학 논총 법학연구』 44[1·2 합병호] 129-211)(2002 「成長発達権の生成」『愛知学院大学論叢法學研究』 44(1·2 合併号)129-211)에서 생성되고 있는 성장발달권을 쫓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선행 연구를 섭렵하여 ‘발달권의 법적 근거’를 8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표 1⁽⁴⁾). 시미즈 히로시 1979 의 ‘생존=발달권’론에 대해, 헌법 14 조(법 아래의 평등), 25 조 1 항(생존권), 26 조 1 항(교육을 받을 권리)을 그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표 1> ‘발달권의 법적 근거’의 8 분류

헌법 14 조(법 아래의 평등)·25 조 1 항(생존권)	
· 26 조 1 항(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시미즈 히로시
헌법 25 조 1 항·26 조 1 항	· · · 이치방가세 야스코(一番ヶ瀬康子),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 26 조 1 항·27 조 1 항(근로의 권리)	
	· · · · · 이이노 세츠오(飯野節夫), 마키 마사나(牧柁名)
헌법 26 조 1 항	· · · 나가이 켄이치(永井憲一)
헌법 13 조 후단(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의 존중)	
· 25 조 1 항·26 조 1 항	· · · 나가오 테루히사(堀尾輝久)
헌법 13 조 후단·26 조 1 항	· · · 카네코 마사시(兼子仁), 제 1 도쿄변호사회
헌법 13 조 전단(개인의 존중)·아동 권리 조약 6 조	
	· · · 후쿠다 마사아키(福田雅章), 야마구치 나오키(山口直也)
헌법 23 조(학문의 자유)·13~22 조(‘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총체)	
· 25 조 2 항(국가의 생존권 보장 의무)·26 조 1 항·27 조 1 항	
	· · · 카츠노 미츠유키(勝野充行)

즉, 시미즈 히로시 1979 「발달할 권리와 그 보장」(『발달의 보장과 교육』(이와나미 강좌·아동의 발달과 교육 제 7 권)1-37, 재수록 1981 「‘생존=발달권’ 보장 이념의 전개-그 국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발달 보장 사상의 형성』 282-317) (清水寛 1979 「発達する権利とその保障」 (『発達の保障と教育』 (岩波講座・子どもの発達と教育第 7 卷) 1-37)에서 시미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 · 그러한 아동의 권리의 국제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주도적인 아동 권리 보장의 이념·원리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생존=발달권 보장이라는 이념·원리다. [재수록 298]

이러한 ‘생존-학습-발달’이라는 인권의 논리와 사상이, 그 뒤 국민의 교육권 보장 운동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증 심신 장애아의 발달 보장 운동 속에서 생성되어 온 생존=발달권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재수록 313]

4. 발달권 보장 연구가 계승해야 하는 과제와 전망

【1974 「발달의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 1979 인권 발전의 3 단계·방향성】

시미즈가 일본교직원조합 위촉으로 만들어진 교육제도검토위원회(1970-74, 회장: 우메네 사토루[梅根悟])의 전문 조사 위원으로서, 「모든 장애인의 발달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장을 중심으로 문안 작성에 관여한 점도 중요하다. 교육제도검토위원회는 그 보고서 『일본의 교육 개혁을 쫓아서』(『日本の教育改革を求めて』, 케이소쇼보, 1974)에서 ‘교육에서의 정의의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시미즈의 공적은 크다.

• • • 이런저런 면에서 발달에 뒤쳐진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록 이른바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장기적인 보호와 교육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층 더 인간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재인식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85]

• • • 우리들은 이렇게 재인식된 기회 균등의 원칙과 '발달의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의 원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교육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85-86]

앞서 언급한 시미즈 히로시 1979 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 발전의 단계·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재수록 302). 즉, ①인권의 평등화, ②권리의 실질화, ③인권 전반의 확충화다.

이러한 제기를 필자(1954 년~) 등의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여, 나아가 다음 젊은 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⁵⁾ 하는 것인가.

【발달권 보장 연구의 과제와 전망】

첫 번째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나 그 둘의 변증법적인 발전 관계에 대하여, 시대의 진보에 걸맞도록 민감할 것을 들고자 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 조항은 역사적으로는 '능력에 따른 경쟁의 자유' '능력 있는 자에게 열린 기회'라는 근대 사상(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능력에 따라"는 역사적인 변혁이자 진보였다. 또한 세금이나 제반 경비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라고 하는 등,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점은 오늘날 기준에서 보더라도 나아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적당히, 라는 능력정도주의 입장은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남용하거나 고교 선발제에 따라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능력정도주의는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능력 차별을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나 고령자, 따돌림 당하는 사람, 등교 거부자, 학대 피해자, 비행하는 아이, 다문화 아동, 나아가서는 빈곤층이나 지진 재해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해자, 전쟁 피해자 등 발달권 보장에 관한 실천과 운동이 미칠 영향 범위는 폭넓다. 21 세기에 들어서 여러 실천과 권리 보장 운동이 진전된 점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되돌아보면서 과제와 성과를 찬찬히 살펴보는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두 번째로, 자유권적인 관점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사회권, 더 나아가 연대권(連帶權)으로 감싸 안는 3 층 구조적인 발달권 보장 이해를 들고자 한다.

발달권 보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평등론이나 생존권(사회권)과 같은 것이 강조되어 왔다. 시미즈 히로시의 설을 포함해서 그것은 매우 타당한 이론 정립이며 정당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따돌림·등교 거부 등 학교 교육 자체가 아동의 권리

침해를 일으켜 부적응(때로는 자살)을 초래하는 실정에 비추어, 학교교육법 1 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통학하거나 취학하지 않을 권리(대안 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학습권론을 구축할 필요를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 26 조 발달권의 법적 근거로 다뤄지기도 하는 13 조의 ‘개인 존중,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의 존중’을 더하여 ‘전면적으로 열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학습 보장에 대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타나베 아키오 2003 「‘발달 보장’ ‘발달권’ ‘학습권’론을 재검토하는 관점」 『장해자문제연구』 31(2) 21-28). 13 조에 관한 자기 인생 창조 회구권이라는 새로운 제안에도 주목하고자 한다(타케나카 이사오[竹中勲] 『헌법상 자기 결정권』 세이분도 2010).

발달은 평화나 환경 등과 같이 한 국가가 홀로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지구 단위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발달권은 제 3 세대의 새로운 인권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사회권(제 2 세대의 인권)과 연대권(제 3 세대의 인권)도 자유권(제 1 세대의 인권)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인권이다. 자유권을 감싸 안으며 상호 보완하는 3 층 구조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자유권이 핵심을 이루어야 발달권은 위력과 효력을 더한다(와타나베 아키오 2008 「권리론에서 본 발달 보장·발달의 권리」 『인간발달연구소기요』 [20·21 합병호] 122-141).

세 번째로 능력 기준에서 필요 기준으로의 전환을 전망하고자 할 때, 그 단계와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타나베 아키오 2019 『능력·빈곤에서 필요·행복 추구로』 니폰효준).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 가지 방안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능력 규정 그 자체를 충분히 읽어내서 깊이 해석하는 방법이다(시미즈, 호리오 등). 둘째는 능력을 보충하는 적절한 구절을 더함으로써 그 뜻을 확충하는 방법이다(일본 1946 교육쇄신위원회 “그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 한국교육기본법 “능력과 적성에 따라”). 셋째로 특정 대상에 대한 대응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2005 개정 교육기본법 4 조 2 항: 장애인에 대해 교육상 필요한 지원 보장). 넷째로 능력 규정에 필요 규정을 병기하는 방법이다(핀란드 헌법: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섯째로 더 상위의 원칙이나 이념을 헌법 및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발전)에 대한 권리).

시미즈 히로시에게 배움을 얻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주 기

- (1) 사이타마대학을 정년 퇴직하기 전에 대해서는, 니시무라 쇼지 2002 「시미즈 히로시 교수의 사람과 업적」 (『교육과학Ⅲ』 51(1) 1-7) (西村章次 2002 「清水寛教授の人と業績」 (『埼玉大学紀要教育学部 (教育科学Ⅲ)』 51(1)1-7)), 타카하시 코헤이·시미즈 히로시 2002 「시미즈 히로시 저작 관계 목록 일람-1959(쇼와 34)년 2 월~2002 (헤이세이 14)년

3 월-」(동 127-181)(高橋浩平・清水寛 2002「清水寛著作関係目録一覧—1959(昭和34)年2月~2002(平成14)年3月—」(同127-181))을 참고하면 좋다. 그 뒤에도 오가와 슈이치(小川修一)・시미즈 히로시가 책자 형태의 저작물을 2016[Ⅱ](2002년 3월~2016년 3월), 2019[Ⅲ](2016년 4월~2019년 12월), 2021[Ⅳ](2020년 1월~2021년 3월)에 걸쳐 계속해서 펴냈다. 자잘한 논고도 망라하여 신문기사나 서평 등도 수록하고 있어, 시미즈 히로시의 연구에 대해 아는 데 유용하다. 덧붙여 문서 일람 I~IV을 수집하는 데 후나바시 히데히코(船橋秀彦, 복지형 전공과 산티즈쿠바)님, 카나마루 아키토시(金丸彰寿, 고베쇼인여자학원대학)님께 도움을 받았다.

(2) 번역자 주

(3) 시미즈 논문 1969는 나가이 켄이치 편『문헌 선집 일본국헌법 8 교육권』(산세이도 197, 245-258) 및 이가사키 아키오 편『교육기본법 문헌 선집 3 교육의 기회 균등 제3조』(가쿠요쇼보 1978, 225-242)(永井憲一編『文献選集日本国憲法8 教育権』(三省堂 197, 245-258)、並びに伊ヶ崎暁生編『教育基本法文献選集3 教育の機会均等 第3条』(学陽書房 1978, 225-242))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인권으로서 교육권’이나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을 배우고 배움을 깊이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헌 중 하나이다. 시미즈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가이는 “이 논문은 부제이기도 한 ‘헌법・교육기본법제에서의 장애아 학습권’의 ‘재인식’을 제창하는 것으로, 헌법 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하게’와 ‘능력에 따라’의 관계와 입법 취지를 제헌 심의 과정에 따라 명확히 한 점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수록하기로 하였다.”(229)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가사키는 “특히 헌법 제26조의 ‘평등하게’와 ‘능력에 따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무차별 평등성이 기본 축이고 ‘능력에 따라’는 그 권리 보장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보완 규정인 것으로 보면서, ‘권리로서 장애아 교육’은 학습권을 핵심으로 여러 권리를 통합했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 그 의의가 크다.”(160-161)라고 설명하고 있다.

(4) 핫토리 아키라 2002「성장발달권의 생성」(158)(服部朗 2002「成長発達権の生成」(158))의 분류 중 일부를 순서를 바꾸고 보충하여 표기했다(처음 게재한 것은, 와타나베 2003「『발달 보장』 ‘발달권’ ‘학습권’을 재검토하는 관점」『장애자문제연구』31(2) 21-28)(渡部昭男 2003「『発達保障』『発達権』『学習権』を練り直す視点」『障害者問題研究』31(2)21-28)).

(5) 시미즈 히로시의 여러 연구를 비판적・발전적으로 검토한 연구 성과로, 우나이 아카리 2021『오우미학원・비와코학원에서의 중증 장애아의 ‘발달 보장’: <가로의 발달>의 역사적・사상적・실천적 정립』카자마쇼보(垂髪(うない) あかり 2021『近江学園・びわこ学園における重症児者の「発達保障」: <ココへの発達>の歴史的・思想的・実践的的定位』風間書房), 카나마루 아키토시 2024『‘공생’의 교육 창조를 향한 <관계 형성> <이해・인식>의 내용과 관련: 교토부에서의 ‘공동 교육’ 실천의 유산』카자마쇼보(金丸彰寿 2024『「共生」の教育創造に向けた〈関係形成〉〈理解・認識〉の内容と連関: 京都府下における「共同教育」実践の遺産』風間書房), 가 있다.

부기

본고는 와타나베 아키오 2012 「해제: 발달 보장의 원류」 『인간발달연구소 기요』(24・25 합병호) 107-114 (渡部昭男 2012 「解題: 発達保障の源流」 『人間発達研究所紀要』(24・25 合併号)107-114)에 일부 내용을 더해 수정한 것이다.